

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의안번호 : 1638
-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제 출 일 : 2024년 2월 5일
- 회 부 일 : 2024년 2월 7일

2. 제안이유

- 초등학교 입학기 및 적응기인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경력단절 없이 일하면서 탄력적으로 자녀지도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신설함.

3. 주요내용

-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(특별휴가)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함(안 제24조제5항)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.
- 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3.11.16.~12.06.) 결과: 의견있음(미반영)

입법예고결과 요약서		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건	조 치 내 용
○○○ 외 2	사용기간을 12개월 범위에서 36개월 범위까지 확대.	○ 미반영 - 대상자녀의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여부는 제도 시행 이후, 대내외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검토 필요. ※ 금번에 신설하는 특별휴가는 초등학교 자녀의 학령기 초기 준비 및 적응을 돕기 위한 취지로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12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□□□ 외 1	사용대상 자녀 연령을 6세 이상 8세 이하에서 초등학교 3~6학년 까지 확대.	
△△△ 외 1	사용대상 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모두 확대.	

5. 검토 의견

1) 특별휴가 조항 신설(안 제24조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(이하 ‘본 개정안’)은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12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제5항 신설).

현행	개정안
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(생략)	<u>⑤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준비,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다.</u>
⑥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.	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⑦ ~ ⑬ (생략)	⑦ ----- ----- 제6항 ----- ----- ----- -----.
⑭ 제13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, 자녀(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)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(자녀가 2명 이상이면	⑧ ~ ⑭ (현행 제7항부터 제13항까지와 같음)
	⑮ 제14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)까지 유급으로 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⑰ · ⑱ (생략)	⑰ · ⑱ (현행 제17항 및 제18항과 같음)

-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는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, 상위규범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현행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1일 최대 2시간 이내 24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,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기인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육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유급 특별휴가를 통해 교육·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짐.
- 다만, 대상자가 현원(9,603명)의 9.4%(900명) 수준인 바, 특별휴가 신설에 따른 업무 공백 가능성에 대한 대비와 함께 실질적인 특별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〈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현황 〉 ('24.1.31.기준)

구분	현원 계	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	비율
계	9,603	900	9.37

* 현원 : 본청 및 사업소의 일반직, 임기제 공무원 전체(시선제, 한시 제외)

- 아울러, 특별휴가 사용 시 초과근무를 할 수 없는 바, 이로 인해 특별휴가 사용률이 저하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, 추후 특별휴가 시행에 따른 서울시공무원 출산율 변동사항 및 본 개정안으로 신설되는 “교육지도시간”을 위한 특별휴가 활용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한편, 그동안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·가사 휴직과 휴가 제도를 늘려 왔으나,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.
 - 육아 휴직자의 민원 등을 살펴보면 휴직 후 근평과 보직관리에 대한 배려가 없는 등 조직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조직문화에서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동기 부여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.
 - 출산·육아 휴직·휴가자에 대한 조직 차원에서의 적극적 배려에 대한 의회차원의 독려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〈 육아관련 휴직·휴가 관련 최초 신설 현황〉

구분	종류	휴직(휴가) 일수	신설 일자
휴직	육아가사휴직	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	1995. 1. 1.
휴가	출산휴가	출산 전후 총 90일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 임신한 경우 120일)	2006.11.1.
	모성보호시간	임신 기간중 日 2시간 이내	2013. 5. 13.
	5세이하 육아시간	日 최대 2시간 이내, 24개월 이내	2017. 4. 25.
	임신검진휴가	임신 기간 중 10일	2019. 12. 31.
	가족돌봄휴가	10일 이내 (미성년 자녀돌봄, 장애자녀의 부모, 한부모공무원 2~3일 유급, 그 외 가족돌봄 사유 무급)	2020. 10. 20.

2) 자구표현 정비(안 제7조, 제8조, 제11조, 제13조, 제22조, 제26조)

- 안 제7조, 제8조, 제11조, 제13조, 제22조 및 제26조는 조례의 표현 문구를 띄어쓰기 등 어문규범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.

※ 안 제7조 : “대비하기위한” → “대비하기 위한”

“범위 안” → “범위”

※ 안 제8조 : 이하“출장공무원” → 이하 “출장공무원”

※ 안 제11조 : “15일 범위 안” → “15일의 범위”

※ 안 제13조 : “범위 안” → “범위”

※ 안 제22조 : “범위 안” → “범위”

※ 안 제26조 : “범위 안” → “범위”

- 조례의 문구·표현 등을 정비하여 각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용어 정비는 조례나 규칙 등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,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전문위원	정 찬 일	입법조사관	이 태 기
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

〈참고자료〉

〈 서울특별시 특별휴가 현황 〉

휴가 종류		휴가 사유	휴가 일수
특별휴가	경 조 사 휴 가	결혼, 배우자 출산, 입양, 사망 등 경조사	경조사 및 대상에 따라 1~20일
	출 산 휴 가	임신, 조산 위험 또는 출산 여성공무원	출산 전후 총 90일(한 번에 <u>둘 이상의 자녀 임신한 경우 120일</u>)
	유 산 . 사 산 휴 가	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 및 배우자	. 본인: 임신기간에 따라 10~90일 . 배우자: 3일
	임 신 검 진 휴 가	임신한 공무원이 임신기간 동안 검진이 필요한 경우	임신 기간 중 10일
	모 성 보 호 시 간	임신공무원	임신 기간중 日 2시간 이내
	육 아 시 간	5세(생후 72개월 미만)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	日 최대 2시간 이내, 24개월 이내
	난 임 치 료 휴 가	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	여성 최대 4일, 남성 1일
	여 성 보 건 휴 가	생리 기간중 휴식을 부여	매월 1일 (무급)
	가 족 돌 봄 휴 가	미성년 자녀 및 그 외 가족(성년 자녀, 배우자, 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, 손자녀) 돌봄	10일 이내(미성년 자녀돌봄, 장애 자녀의 부모, 한부모공무원 2~3일 유급, 그 외 가족돌봄 사유 무급)
	자 녀 입 영 휴 가	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	입영 당일 1일
	수 업 휴 가	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 중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출석 수업에 참석할 때	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일수
	재 해 구 호 휴 가	재해피해 공무원 및 재해지역 자원봉사 공무원	5일 이내
		사회·경제적으로 광범위한 <u>대규모 재난</u> 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및 자원봉사를 하려는 공무원	자원봉사활동 : 5일 이내 피해입은공무원 : 10일 이내
	심 리 안 정 휴 가	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동료와 직접 접촉한 사건·사고	사건·사고 발생후 1개월 이내 최대 4일(일 또는 시간단위 사용)
	장 기 재 직 휴 가	5년이상 10년미만, 10년이상 20년미만, 20년이상 30년 미만, 30년 이상	5~25일
	성 과 우수자휴가 (개인학습휴가)	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	10일 이내
		창의 아이디어 발굴 및 자기주도 학습기회 제공	2일 이내